

## 2. 버스 중앙차로 효율성 향상 방향 및 일반차로 차량이동 향상 방향

- ①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내에 택시운행 허용 검토
- ②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대책

### ①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택시 운행 허용 검토

- 버스전용차로 설치근거 : 도로교통법 제15조
- 운영현황 : 24시간 전일제로 운영(12개 노선 120.5km)
- 검토의견

#### 가. 교통안전 및 운영 효율성 문제

- 시내구간 버스전용차로 허용 시 택시 운영 특성상 승객유치 및 주행경로 선택을 위한 잦은 진·출입으로 교통안전 저해 및 버스전용차로 운영 효율을 저하할 우려가 있음

#### 나. 법·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

- 버스전용차로는 교통 혼잡구간에서 대중교통 소통을 증진코자 하는 입법 취지가 있어, 버스전용차로 택시 통행 허용은 시민적 합의 및 중앙정부 차원의 합의와 제도 정비 필요

#### ○ 검토결과

-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택시 통행 허용은 택시의 소통개선 효과 등 실효성에 비해 차량 간 잦은 엇갈림 등으로 인한 교통운영 및 안전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고,
- 근본적으로 대중교통 우선 시책인 버스전용차로제 도입 취지와 기능 유지 등을 고려할 경우 시민적 합의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함

②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대책

- 열악한 수입 및 낮은 사회적 지위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2017년도에는 운수종사자 복장개선, 보수교육 당일 공가처리, 택시운전자 화장실 이용환경 개선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
사업명	주요내용
복장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추진배경 : 택시업계에서 승차복 착용 의무화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 요구</li> <li>▶ 사업기간 : '17.7~12월</li> <li>▶ 제작수량 : 총 112,200벌(1인당 조끼 1벌, 셔츠 1벌)</li> <li>▶ 사업예산 : 1,610백만원(민간경상보조)</li> </ul>
보수교육 공가처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노·사간 근로조건으로 되어있는 보수교육 공가처리를 사업개선명령에 공가처리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규정('17.9월~)</li> </ul>
화장실 이용환경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택시카드결제기에 화장실 정보 제공 기능 추가하여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울시내 5,015개 화장실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 제공('17.9월~)</li> </ul> </li> <li>▶ 주유소 화장실 용품 지원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총 443개소 서울시내 주유소, 연 134백만원, 주유소협회·시 등 MOU체결</li> </ul> </li> </ul>

- 앞으로도 양조합 및 노조의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임

작성 자	기관명 (부서명)	직위	성명
	서울특별시 (택시물류과)	담당사무관	박병성
	서울특별시 (교통운영과)	담당사무관	박동욱
	☎ 2133-2313	주무관	강윤희
	☎ 2133-2476	주무관	이민호
작성일 : 2017. 9.12			